

#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

심의일자	2021. 6. 3.(목) 14:00		
사업명	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(보고)		
신청위치	동대문구 이문동 257-42번지 일대		
의결번호	(굴토)2021-8-1	심의결과	조건부(보고)완료

## [심의 내용] 굴토계획

-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“조건부(보고)완료” 되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는 **인·허가권자가 확인**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「건축법」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## < 굴토분야 >

###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

- 보고자료 p.16 PHC 파일의 경우 “A”종의 변경된 구조계산서 부재로 적정성 검토가 불가함에 따라 확인 바람.

### 흙막이 가시설 분야

- 굴착계획 단면도에 앵커(또는 네일링) 시공, 품질관리 및 공사 중 유지관리를 위한 제원(인장력, 늘임량, 정착장 등)을 표기하고, 앵커(또는 네일링) 관련 본공사 전 시험 인장시험을 실시하고 설계와 부합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, 시험 인장시험 결과를 설계와 비교하여 안전성을 검토 바람(공사전 반드시 실시 바람).
- 흙막이 관련 네일링 설계 전개도에 수평 배수공을 명확히 표기 바람.
- 보고자료 p.21 근린생활시설 2차 가시설 공사시 지하주차장과 근접한 개소의 어스앵커를 삭제하여도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지 확인이 불가하므로 지보공법을 버팀보공법으로 변경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 바람.
- 보고자료 p.29~31 매립층 1:0.5, 풍화암 1:0.2의 영구비탈면의 경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배로 판단되며,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층의 네일 길이가 암반층에 적용한 네일의 길이 보다는 짧게 적용된다는 것이 합당한지 재검토하기 바람.
- 표면보호공에 대하여 상세한 검토를 수행하여 적용하고 도면 및 보고 자료에 제시하기 바람.
- 흙막이설계보고서에 따르면 가시설 구조계산을 수행함에 있어 배면측 수위를 굴착측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향하여 수압을 감소시켜 안정 검토를 수행한 바, 수위를 조정된 사유 및 근거를 제시하기 바람.

- 가시설 상세도(17)에 흠막이벽체(CIP) 길이와 일치하는 철근 가공 상세도, 사용 철근 직경에 따른 겹침이음길이 및 이음갯수 등을 반영한 철근수량 집계표를 반영하기 바람.
- 굴착 및 흠막이 계획 전개도(10)~(23)에 CIP 및 H-Pile 길이 및 제원 등을 표기하기 바람.
- E/A 제거와 더불어 건축구조물의 시공순서를 포함하기 바람, E/A 제거시 건축구조물 외벽에 가해지는 하중 등을 반영한 구조계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, 흠막이가시설과 건축구조물과의 간격이 1.5~2.0 이하로 보이는데,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다짐방법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제시 바람.

#### 계측관리 분야

- 계측 계획서가 아니라 계측 설계서를 별도로 제출 바람.
- 지중 경사계가 33개소인데 지하수위계도 동일한 숫자만큼이 있을 필요가 없으므로 1/2~1/3로 줄이기 바람.
- 계측관리 기준의 모든 계측기에 대한 설계 예상치는 설계자가 제시 바람.
- 동측 17m 도로 구간에 지표침하계를 추가하여 지반 거동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.

#### 기타분야

- 설계에 적용된 영구배수 공법은 유입수량의 최소화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유입수에 대한 상수위 조절을 통하여 유입수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바람(유지관리 및 유지관리 차원에서 검토 바람). 끝.